

화학물질에 대한 도급승인과 도급신고의 현황 및 제도 개선 필요성 연구

이용근 · 류인건 · 김하경 · 박기한¹ · 김성준¹ · 이권섭^{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¹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A Study on the Operational Status and Need for Improvement of the Contract Approval and Contract Reporting System for Chemical Substances

Yong Geun Lee · In Gun Ryu · Ha Kyung Kim · Ki Han Park¹ · Seong Jun Kim¹ · Kwon Seob Lee^{1*}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¹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ergy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tribute to the more efficient operation of the domestic contracting system.

Methods: We examined the criteria for judging contractors, contractors, and related contractor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During the period of 2020~2023, an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n the perform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contract approval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contract report. We compar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ystem related to contract approval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contract notification under the Chemical Control Act.

Results and Conclusions: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contract approval in 2023(1,380)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creased by about 170.6% compared to 2020 (510). The number of contract reports in 2023(3,893) under the Chemicals Control Act increased by about 32.5% compared to 2020(2,938). The contents of the overlapping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operation of domestic contract approval and contract notification braking differed in the contents of the chemical substances subject to contract declaration, the scope of work subject to contract declaration, the time of document submission, and the expiration date. In connection with the improvement of the overlapping regulatory chemicals in the contract management system, it was necessary to take measures such as the unification of the submitted documents related to the contract report and the unification of the review agency for the submitted documents.

Key words: contract approval, contract reporting system, risk outsourcing

I. 서 론

산업구조의 변화로 위험의 외주화의 확대·심화,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 등의 도급에 의해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원청)의

산업재해예방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의 전부개정법령(2019.1.15. 공 포)은 2020년 1월 16일 시행되었다(MoEL, 2024). 1990년 최초의 전부개정 이후 28년 만에 이뤄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은 보호 대

*Corresponding author: Kwon Seob Lee, Tel: +82-62-530-0677, E-mail: lks0620@hanmail.net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ergy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05, 3A College of Engineering, 77 Yongbong-ro, Buk-Gu, Gwangju 61186

Received: February 15, 2025, Revised: February 28, 2025, Accepted: March 18, 2025

 Yong Geun Lee <https://orcid.org/0009-0001-0130-4861>

 Ha Kyung Kim <https://orcid.org/0009-0007-1685-9548>

 Seong Jun Kim <https://orcid.org/0000-0002-6440-2418>

 In Gun Ryu <https://orcid.org/0009-0008-0465-4331>

 Ki Han Park <https://orcid.org/0009-0003-5261-4960>

 Kwon Seob Lee <https://orcid.org/0000-0001-5453-4620>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상의 확대와 산업보건안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건설업과 조선업에 국한되었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최근에는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종에도 일반화”되고 있다(Shin et al., 2020).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근로조건 노출과 안전보건정보 확보와 작업관리에 관련된 권한이 원청업체 근로자만큼 갖기 힘든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도급업체들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계된 작업권을 위임받다 보니 제대로 된 사전 사고대응이 힘든 실정이다(Lee, 2016).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prohibition of contracts for hazardous work, 이하 도급금지) 작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다만, 일시·간헐 작업은 도급 가능,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사전 도급승인을 받으면 도급이 가능하다.) 하고 있으며, 작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려는 경우에서 도급의 ‘인가’를 도급의 ‘승인’으로 변경 강화하였다(MoEL, 2024). 또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조치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관계 수급인에게 도급할 수 있도록 도급승인(approval of contracts)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였다(MoEL, 2024).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에서는 유해화학물질(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영업을 하는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수급인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 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도급신고(reporting of contracts) 하도록 하고 있다(MoE, 2024).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방지하고 도급행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 등으로 도입된 환경부 도급신고 제도에서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①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②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③ 도급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도급변경 신고서 등의 서류(① 변경된 도급계획서,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제출)하여야 한다(MoE, 2024).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도급, 도급인, 관계수급인에 대한 판단기준과 2020년~2023년도 고용노동부 도급승인 및 환경부 도급신고 실적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과 화학물질관리법 도급신고 제도의 차이점 비교하여 중복된 도급관련 산업체 규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도급제도의 운영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작업(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MoEL, 2024)에 대한 산업체 중복 규제개선 필요내용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관계된 조치 필요사항을 제시하여 국내 도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및 도급인 판단기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MoEL, 2024)에서의 도급, 도급인, 관계수급인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계수급인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수급인(또는 도급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임을 전제(도급인 및 수급인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3자 관계)로 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2. 고용노동부 도급승인 및 환경부 도급신고 현황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규정에 의한 2020년~2023년도 도급승인 신청 및 도급평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규정에 의한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2020년~2023년도 도급신고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관계된 정부발

간 자료의 내용 부재와 국내 연구 현황 자료의 부족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산업보건실의 도급승인 신청 현황과 환경부 환경보건국의 도급신고 현황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후 관련업무 담당자를 방문하여 업무 관리시스템 등에서 관리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3.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의 승인 제도와 화학물질관리법 도급신고 제도의 차이점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의 승인 제도(MoEL, 2024)와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제도(MoE, 2024)의 차이점에 관련된 내용은 2024년 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두 가지 법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상 화학물질, 승인 및 신고 대상 작업의 범위, 서류제출의 시기, 유효기간,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4. 고용노동부 도급승인과 환경부 도급신고 제도의 중복 규제관련 제도개선 필요내용 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규정에 의한 고용노동부 도급승인 제도(MoEL, 2024)와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에 의한 환경부 도급신고 제도(MoE, 2024) 운영에 따른 산업체 중복 규제에 관계된 제도개선 필요내용 및 조치 필요사항을 제시하였다.

III. 결 과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및 도급인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일의 완성 또는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 도급계약(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도급계약은 "타인에게 맡기는 업무가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업장소, 사업목적 및 사업 수행과정의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도급인으로서 의무주체인지 여부를 판단하며, 도급인의 사업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에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생산·제조 등 일련의 과정 중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 도급인의 의무를 부과한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MoEL, 2024)에서도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도급의 정의를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기계장치, 전기·전선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에도 도급에 포함하고 있다"(MoEL, 2021).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수급인(또는 도급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임을 전제(도급인 및 수급인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3자 관계)로 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기는 계약(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2. 고용노동부 도급승인 및 환경부 도급신고 현황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규정에 의한 도급승인 신청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규정에 의한 도급신고 현황(2020년~2023년)은 Table 1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규정에 의한 산업체의 도급승인 신청 건수는 2020년 510건, 2021년 787건, 2022년 1,193건, 2023년 1,380건 등으로 조사되었다. 도급승인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었으며, 2023년의 도급승인 신청 건수(1,380건)는 2020년(510건) 대비 약 170.6% 증가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규정에 의한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도급신고 건수는 2020년 2,938건, 2021년 3,211건, 2022년 3,729건, 2023년 3,893건 등으로 조사되었다. 도급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었으며, 2023년의 도급신고 건수(3,893건)는 2020년(2,938건) 대비 약 32.5% 증가하였다.

4년(2020년~2023년)의 기간 동안 산업체에서 고용

Table 1. The results* of contract approval application and contract reporting in South Korea(2020-2021)

Year	Application of contract(case) by the MoEL [†]	Reporting of contracts(case) by the MoE [‡]
Total	3,870	13,771
2020	510	2,938
2021	787	3,211
2022	1,193	3,729
2023	1,380	3,893

*The data on the status of the application for contract approval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status of contract reporting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re the results of a survey centered on the contents managed in the work management system, etc., by visiting the person in charge of related work.

[†]MoEL: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 Ministry Of Environment.

노동부에 신청한 도급승인 건수는 3,870건 이었으며, 동기간 동안 산업체에서 환경부에 신고한 도급신고 건수는 13,771건으로 조사되었다. 고용노동부 도급승인 건수(3,870건)는 환경부 도급신고 건수(13,771건) 대비 약 28.1% 수준이었다.

3.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의 승인 제도와 화학물질관리법 도급신고 제도의 차이점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의 승인 제도(MoEL, 2024)와 화학물질관리법 도급신고 제도(MoE, 2024)의 차이점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ontract approval system and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contract reporting system

Item	Approval of contract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Reporting of contracts under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Law regulation	Article 58 (Prohibition of Contracts for Hazardous Work) Article 59(Approval of Contracts)	Article 31(Reporting on Awarding of Contracts for Handling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Target chemicals	Sulfuric acid, hydrogen fluoride, nitric acid, hydrogen chloride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under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Work scope subject to subcontract management	If you intend to contract for remodeling, disassembly, dismantling, or demolition of facilities that handle substances with acute toxicity or skin corrosiveness among work harmful or dangerous to safety and health, or work performed inside the facility, or matters for which contract approval has been obtained(1. Contract process, 2. Maximum amount of hazardous chemicals used in contract process, 3. Contract period).	If a person engaged in hazardous chemical business contracts to handle hazardous chemicals or intends to change important matters among reported matters(1. Hazardous chemical items, 2. Hazardous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subject to contract, 3. Contract period).
Submission of documents	If you want to contract work such as handling substances that are harmful or dangerous to safety and health, such as acute toxicity and skin corrosiveness, or if you want to change the approved contract. - If there is an urgent risk of an industrial accident and an urgent contract is required, all documents related to the work to be contracted and the evaluation results on safety and health can be omitted(Article 78(2) of the Enforcement Rule).	If a hazardous chemical business operator contracts the handling of the relevant hazardous chemicals, submit it before the contractor performs the contracted work. - If the contractor needs to urgently perform the contracted work, submit it within 10 days from the start of the contracted work.
Validity	3 Years(extendable)	No regulations
Subcontracting management of reporting work	Forbidden in principle	No regulations
Penalty and fines	Penalty : 40/100 of the annual contract amount(Up to KRW 1 billion)	Fine : 1st violation: 6 million won 2nd violation: 8 million won 3rd violation: 10 million won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의 승인 제도와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제도의 비교 결과 많은 차이가 있는 항목은 대상 화학물질, 승인 및 신고 대상 작업의 범위, 서류제출의 시기, 유효기간,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대상 화학물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등 4종의 강산성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관리법 도급신고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모두가 그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규정에서는 도급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가 적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도급의 승인된 작업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하도급이 가능하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에서는 도급신고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급신고 작업에 대한 하도급 금지를 규

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다.

4. 고용노동부 도급승인과 환경부 도급신고 제도의 중복 규제관련 제도개선 필요내용 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규정에 의한 고용노동부 도급승인 제도와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에 의한 산업체 중복 규제에 관계된 제도개선 필요내용 및 조치 필요사항의 내용은 Table 3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의 승인 제도와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제도에서 중복 규제되고 있는 4종의 강산성물질(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의 취급을 도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대한 각각의 제도 이행이 필요하며, 양 정부부처에 유사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게 함으로써 화학물질과 관련된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도급승인 또는 변경승인 제출서류(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내용에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도급신고 시 제출서류(도급계획서,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긴급 도급 사유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계 법령

Table 3. The necessity of regulatory improvement on contracts approval and contracts reporting system

Item	Needs for regulatory improvement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the four major strong acids	Improvement of regulations for duplicate and separate submission of similar data to two government departments. - In the event that a contract or change is approved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contract reporting or change reporting under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Supplementation of documents for contract approval	When reporting a contract under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it is supplemented so that the contents of the documents to be submitted(contract plan, chemical accident safety management plan, and emergency contract reason statement) can be included.
Review of submitted documents	Each organization reviews the application through an adequacy review process that considers expertise, and then returns the results to the applicant business site.
Management of contract approval results	Establishment of a work management system that can notify the Minister of Environment(MoE) of the results of the approval of the contract or chang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for the four redundant substances without delay.

에 의한 양 정부부처의 중복물질에 대한 도급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중복 규제개선 대응 시 고려사항은 환경부의 경우 정상작업 시 정상 가동에 따른 도급신고이고, 고용노동부는 정상 가동 이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등에 관계된 도급승인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급승인(고용노동부)과 도급신고(환경부)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일원화하고,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는 각각의 기관에서 전문성이 고려된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걸쳐 심사 결과를 신청사업장 회신 후 후속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V. 고 찰

위험의 외주화 근절 및 최소화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대한 도급금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의 시작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하청근로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산재사고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Lee, 2016).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서는 도급을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도급의 효력에 대하여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에서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8180호, 2021년 5월 18일 일부개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도급의 정의를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판단하고 있다(MoEL, 2024).

1990년대 말 국내 외환위기 발생 전후 기업에서 사내하도급 형식의 외주화 방식인 간접고용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계약의 거래비용, 정규직 근로자의 책임 회피 등의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Baek et al., 2007; Kim et al., 2011; Shin et al., 2020). 직영관리의 사업장 관리체계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40.8%)을 차지하는 것은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 때문이다(Shin et al., 2020).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 요건 중 하나인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는 원청 근로자 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재해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되고 있다(Baek et al., 2007; Shin et al., 2020).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사내하청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들보다 높은 경향이다(Shin et al., 2020).

2015년 1월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에 의하면 “대기업이 사내 유해·위험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분리·도급함으로써 산재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일반화되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하청업체를 활용하는 유해·위험한 작업 근로자의 간접고용 실태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급작업에 대한 법 규제는 규제 또는 처벌보다 그 실효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관리되어야 한다(Jung, 2022).

도급승인 대상 작업 및 설비에 대한 안전보건평가와 작업절차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도급관리 대상 화학물질의 제거방법 및 차단계획, 잔여 화학물질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적절하게 수립하여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MoEL, 2024). 산업체의 고용노동부 도급신청 건수와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도급신고 건수에 관한 자료를 기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의 승인 제도와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제도 운영에 관계된 절차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산업체 중복 규제의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관계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국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의 작업에 대한 도급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재해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시행된 도급승인 제도의 효과분석을 위해 2020년 이후 최근 5년(2020년~2024년)의 기간 동안 도급신청서를 5건 이상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산업재해 발생실태와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에 기인한 산업재해 발생실태를 조사하여 도급승인 등의 도급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산업재해 감소효과 분석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V. 결 론

국내 산업계의 중대재해 건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망건수는 오히려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산업체의 고용노동부 도급신청 건수와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도급신고 건수는 2023년의 각각 1,380건, 3,893건이었으며, 2020년 대비 약 170.6%와 약 32.5% 증가하였으며, 4년(2020년~2023년)의 기간 동안 산업체에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도급승인 건수(3,870건)는 환경부의 도급신고 건수(13,771건) 대비 약 28.1%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의 승인 제도와 화학물질관리법 도급신고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한 결과 많은 차이가 있는 항목은 대상 화학물질, 승인 및 신고 대상 작업의 범위, 서류제출의 시기, 유효기간,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대상 화학물질의 경우 4종의 강산성물질(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이 중독되는 화학물질이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2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학술용역에 따라 수행된 결과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Baek JB, Jeong CH, Bae DK. Subcontractor system worker protection measures against harmful and dangerous work.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K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OSHRI) Research Report. 2007

Jung JW. A comparative study of the legal regulations on contracting for dangerous work.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22;32(3):279-286

Kim JI, Noh BK, Park BJ, Kwon OS. Improvement plan through cause analysis of in-house subcontracting utilizatio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Research Report. 2011

Lee KS. Necessity of improvement of hazardous work contract management to eradicate risk outsourcing.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OSHRI) Safety and Health Research Trends. Vol10 No1; 2016. p.16-33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Guidelines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in contracting. 202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Enforcement Decree, Enforcement Regulations, and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2024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Operational guidelines for prohibition of contracting and contracting approval system. 2021

Ministry Of Environment(Mo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Enforcement Decree, Enforcement Regulations, and Rules). 2024

Shin KS, Kim TY, Hong KS. An analysis of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contract prohibition and approval system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Korea Labor Institute. 2020

<저자정보>

이용근(과장), 류인건(과장), 김하경(대리), 박기한(연구원), 김성준(교수), 이권섭(교수)